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

The Effect of Payment Order in Wholesale Electronic Fund Transfer

강원진(Won-jin Kang)* · 이병렬(Byeong-ryul Lee)**

요 약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은 원지시인으로부터 구속력을 가진 지급지시의 발행,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른 승낙,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원지시인으로서 입증된 전송자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한 입증과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특히 보안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 Word : 전자자금이체, 지급지시

	목 차
I. 서 론	IV. 지급지시의 효력소멸
II. 지급지시의 본질	V. 결 론
III. 지급지시의 효력 발생	참고문헌

I. 서 론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대금결제방법도 기존의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결제방식에서 전자결제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비자간의 전자자금이체는 1978년의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의 제정 및 소비자전자자금이체 규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간 거래와 관련해서는 미국통일상법전 제3편과 제4편 및 보통법원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이체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금이체에 관하여 약정을 하여 왔기 때문에 통일성이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 미국은 기업간 거액전자자금이체에 적용할 미국통일상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부교수(wonjkang@hyowon.pusan.ac.kr)

**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강사(leebyeongryul@hanmail.net)

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제4A편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2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는 국경을 초월한 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한 통일 법으로서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거액전자자금이체는 미국 및 유엔 등에서 법률적인 기반이 구축됨으로서 전자상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는 원지시인이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발생되며 그 이체과정은 원지시인이 수신은행에게 발행한 지급지시로 시작되어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이행과 이체지급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지급지시가 전송자의 착오, 사기 및 과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지시인이 지급지시를 취소하거나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지급지시의 효력이 소멸된다면 전자자금이체는 완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지시인의 채무는 변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급지시의 효력발생과 관련된 문제는 전자자금이체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자금이체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제인 통일상법전 제4A편의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지급지시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통일상법전의 전자자금이체에 관련된 법제 및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유엔 표준법 등 결제시스템의 제도적 측면만을 검토하는데 한정한다. 또한 연구의 방법은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 등 문헌과 미국의 최근판례를 이용하였다.

II. 지급지시의 본질

1. 지급지시와 당사자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payment order)란 확정된 금액 또는 확정 가능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도 혹은 다른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지시하여야 할 의도를 전송자가 그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구두, 문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지시라고 할 수 있다.¹⁾

지급지시의 당사자는 원지시인, 송신은행, 그리고 지급은행이 될 수 있다.²⁾ 지급지시의 첫 번째 당사자는 원지시인이다. 왜냐하면 전자자금이체는 원지시인이 지급은행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신은행에게 지급지시를 함으로서 시작되기 때문이다.³⁾ 원지시인

1) Uniform Commercial Code(이하 UCC라 한다) §4A-103.

2) 기업간 전자자금이체거래를 규율하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4A편과 국제간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표준법(이하 표준법이라 한다)은 지급이체(credit transfer)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원지시인의 거래은행(originator's bank)을 송신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거래은행(beneficiary's bank)을 지급은행으로 표기한다.

3) Thomas C. Baxter, James H. Freis, "Electronic Commerce and Transactions Article 4A and Electronic Payments", American Law Institute-American Bar Association Continuing Legal Education ALI-ABA Course of Study, December 1998, p. 133.

의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당사자는 항상 은행이 될 것이며 전송 당사자인 원지시인은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다.⁴⁾ 원지시인은 자신의 지급지시가 본인이 의도한 수익자에게 정확한 액수와 시기에 송금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원지시인은 자신의 지급지시를 정확하게 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⁵⁾ 만약 송신은행이 수익자를 위하여 이 지급지시를 승낙할 수 없는 경우 원지시인은 본인이 전송한 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⁶⁾

두 번째 당사자로서 송신은행이 있다. 송신은행은 원지시인으로부터 지급지시를 수신하는 제1 수신은행이다. 하지만 송신은행은 그가 수신한 지급지시를 승낙 또는 거절할 수가 있다.⁷⁾ 만약 송신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승낙한다면 원지시인에게서 자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급지시를 승낙한 송신은행은 지급은행에게 다시 지급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송신은행 또한 자금환급보증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⁸⁾ 그러나 송신은행이 중개기관인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지시를 전송하게 되면 이 지급지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송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전에 원지시인의 계정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출금 또는 보유하여 지급지시금액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송신은행이 이체시점에 지급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사자로서 지급은행이 존재한다. 지급은행은 송신은행이나 중개기관을 통하여 수신한 자금을 수익자에게로 지급한다. 송신은행이나 중개기관을 통하여 지급지시를 수신한다는 면에서 지급은행도 수신은행이 된다.⁹⁾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급은행은 수익자에게 이체지급에 관한 지급지시를 승낙¹⁰⁾하는 경우에만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상업적인 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이행할 경우 정상적으로는 전화나 미리 약정한 전자통신의 형태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지급지시 통신시스템

일반적으로 지급지시는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다.¹¹⁾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4) 鄭敬永, “資金移替制度의 法的 研究”, 博士學位論文, 서울大學敎 大學院, 1994, 65-66面.

5) 원지시인은 지급지시를 전송할 경우 특정 중개은행이나 자금이체시스템 등과 같은 중개기관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6) 이를 자금환급보증(money-back guarantee)이라 한다.

7) Benjmain Geva, “UCC Article 4A in the Courts: Recent Developments”,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5, November/December 1998, pp. 1016-1017.

8) 송신은행은 그의 지급지시를 지급은행이 승낙하지 않아 자금이체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지급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는다. 그리고 송신은행이 이미 지급은행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면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9) 제4A편과 표준법에서는 송신은행과 지급은행을 합쳐 수신은행(receiving bank)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이하에서도 이들 은행을 수신은행이라고 표기한다; UCC § 4A-301(a);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이하 Model Law라 한다) § 2(f).

10) 지급은행이 중개은행 또는 송신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수신 받아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 한 것은 지급지시가 아니라 지급지시의 승낙이라고 할 수 있다.

11) 전자자금이체에서 전송시스템은 자금이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통신시스템을 자금이체시스템이라 한다. 여기에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모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할 경우 제4A편의 규정과 연방 준비은행의 시스템 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약정에 따라 시스템의 규정이 제4A편보다 우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양자간 네팅¹²⁾(bilateral netting)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양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순히 양자간에 협정(bilateral arrangement)을 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간의 협정을 체결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는 세계 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 협회¹³⁾(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SWIFT)가 있다. 이 SWIFT는 5천 개 이상의 기관들을 위하여 매일 평균 2조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2백 만개 이상의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있다.¹⁴⁾ SWIFT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수신은행에 있는 전송자의 계정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지급을 한다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¹⁵⁾ 이러한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들은 매일 네팅하는데 이러한 일이 두 당사자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양자간 네팅이라 한다.

둘째, 다자간 네팅¹⁶⁾(multilateral netting)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의 양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를 제공하는 각 은행에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불편하다. 이러한 단점은 매일 마지막 시간에 모든 참여자들의 이체자금을 모아서 총계할 수 있는 중앙청산소를 만들어 은행이 각 참여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전송하면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다자간 네팅에 의한 결제방법이라고 한다. 다자간 결제방법에 의한 중개기관으로서 가장 큰 시스템은 뉴욕에 있는 뉴욕 어음교환소 은행간 결제시스템(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 CHIPS)이다. CHIPS는 매일 100개 미만의 법인들과 2십 만개 이상의 이체건수에 금액으로는 미화 1 천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처리하고 있다.¹⁷⁾

셋째,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자자금이체시스템(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Network : Fedwir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CHIPS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은 역시 Fedwire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은행이 Fedwire를 통하여 미국 내 기관간에 매일 서버하는 금액은 미화 1조 5천억 달러나 되기 때문이다.¹⁸⁾ Fedwire의 뛰어난 장점으로는 CHIPS가 당일 마지막 시간에 결제하는 반면 지급 시에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며 Fedwire

선하여 적용된다; UCC §4A-206.

- 12) 넷팅(netting)이란 양자간 넷팅과 다자간 넷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네팅이란 양자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점간 또는 자사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들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한 후 그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李康男, 「國際金融論」, 法問社, 1999, 433면.
- 13) SWIFT의 최대장점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메시지텍스트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하여 자동처리, 통신여러의 감소, 무서류(paperless)화가 가능하게 되어 자금이체의 합리화, 효율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八尾 晃, 「國際取人と電子決済」, 東京經濟情報出版社, 1997, 163-164면.
- 14) Ronald J. Mann, Payment Systems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Cases, Materials, and Problems,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Inc., 1999, p. 203.
- 15) UCC §4A-403 comment 3.
- 16) 다자간 네팅(multilateral netting)이란 동일그룹 기업내 3개이상의 자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다자간 네팅을 통하여 자금을 결제하면 기업 전체적으로 자금관리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내부의 결제기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李康男, 前掲書, 433면.
- 17) <http://www.chips.org/srats.htm>
- 18) <http://www.bog.frb.feb.us/paymentSystems/FedWire/annual.pdf>; Fedwire가 1 만개 이상의 금융기관에게 서버 하는 반면 CHIPS는 100개 미만의 기관에만 서버한다; Ronald J. Mann, op. cit., p. 200.

가 서버하는 금융기관이 CHIPS가 서버하는 기관보다 훨씬 많고 참여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⁹⁾ 비록 Fedwire가 오프라인(off-line)이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은행들은 연방준비은행과 Fedwire이체를 진행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전자우편과 동일한 전자통신으로 연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다.

III. 지급지시의 효력 발생

1. 지급지시의 구속력

전자자금이체의 목적은 수익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원지시인이 당해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가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수신은행이 피 지급인인 수익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지급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금이체를 위한 지급지시가 이와 같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전자자금이체는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 계약과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전자자금이체가 원지시인과 수익자간의 채권채무계약과 불일치하게 이루어졌다면 비록 자금이체가 이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원지시인의 주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²⁰⁾

둘째, 원지시인은 자금이체비용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송신은행은 지급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에 지급지시금액에서 자금이체비용을 공제할 수가 있다. 만약 지급은행이 승낙하기 전에 송신은행의 비용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자가 지급 받은 금액은 원래 원지시인이 지급지시한 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전자자금이체는 이체규모가 거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비용공제는 수익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원지시인은 그의 채무이행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수익자에게 제공 할 수도 있다.²¹⁾ 따라서 송신은행이 이러한 은행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원래 이행되어야 할 지급지시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수익자에게 이체하였더라도 원지시인이 신속히 그 비용을 수익자에게 지급을 한다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는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원지시인의 수익자에 대한 자금지급의무는 완전히 면제될 것이다.

2. 수신은행의 지급지시 승낙

지급지시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으로는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대한 승낙이 있다. 제4A편에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러한 지급지시의 승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수신은행이 다음의 지급지시당사자에게 지급지시를 전송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19) Fedwire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 달에(이용하는 연결형태에 따라 다르지만)수백 달러의 비용과 매 이체 시 약 50센트의 비용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각 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 Ronald J. Mann, op. cit., pp. 189-190.

21) UCC §4A-406.

왜냐하면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였다는 것은 승낙한 지급지시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급 거절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금이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수익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여야 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즉, 지급지시이행은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거절할 수가 있다. 수신은행은 지급지시 전송 전후를 불문하고 그 지급지시를 승낙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지급지시의 승낙을 자금이체시스템의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지급지시를 승낙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²⁴⁾

그러나 제4A편과 표준법에서는 타 은행간 이체에서 지급지시를 승낙한 수신은행 혹은 증개기관은 이행 일에 지급지시를 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단 수신은행은 지시를 승낙한 이상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지시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²⁵⁾ 또한 제4A편에서는 수신은행의 승낙시점과 관련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4A편에 따르면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이행하는 때에 지급지시를 승낙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원지시인이 송신은행에게 발행한 지급지시는 송신은행이 지급은행과 동일한 경우는 지급일 전에, 만일 그 은행이 지급은행과 상이한 경우는 이행일 전에 승낙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수신은행의 승낙이 명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경우 지급지시의 승낙을 태만히 한 수신은행은 자신이 승낙하여야 할 금액범위까지 또는 그 범위를 한도로 하여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명시적 약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지시를 승낙하거나 또는 지시의 승낙 전에 지급지시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수신은행의 이러한 지급지시승낙에 근거한 채무는 승낙이 일정한 요건²⁷⁾을 갖출 때에만 발생되고 또한 제4A편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²⁸⁾ 따라서 수신은행은 자신이 승낙하지 않은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원지시인 또는 수익자의 대리인도 아니고 해당자금이체에 대한 기타 어떠한 당사자의 대리인도 아니다. 또한 승낙과 관련하여 수신은행이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자금이체의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전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3. 원지시인의 채무이행

22) 이러한 승낙의 방식을 표준법에서는 이행은행(executing bank)에 의한 자발적 승낙이라고 한다; UCC §4A-301(a) & comment 1; Richard F. Dole, "Receiving Bank Liability for Errors in Wholesale Wire Transfers", Tulane Law Review, Vol. 69, March 1995, p. 893.

23) Clayton P. Gillette, Alan Schwartz and Robert E. Scott, Payment Systems and Credit Instruments, The Foundation Press, Inc., 1996, p. 609.

24)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승낙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즉 원칙적으로는 전송자의 지급지시를 승낙할 의무는 없다. 다만 승낙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Tomas C. Baxter, Raj Bhala, "Proper and improper execution of payment orders," The Business Lawyer, Vol. 45, 1990, p. 1453.

25) UCC §4A-302(a); UNCITRAL Model Law §8(2).

26) UCC §4A-209(a).

27)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승낙은 지급지시를 수신하여 이행할 경우에만 발생한다. 만일 수익자가 수신은행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계정이 폐쇄된 경우 또는 수신은행이 수익자의 계정에 입금하는 것을 법률로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은 발생하지 않는다; UCC §4A-209.

28) UCC §4A-212.

지급지시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승낙에 따른 원지시인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금액의 지급이다. 즉, 최종 수신은행인 지급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였다면 원지시인은 수신은행을 통하여 지급 일에 해당지시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²⁹⁾ 제4A편에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³⁰⁾를 제외하고는 그 채무는 동일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가 변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지시인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 받지 못했다면 원지시인은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지시인은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자금이체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전자자금 이체비용은 일반적으로 선급되며 각 당사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약정 할 수 있다.³¹⁾ 따라서 은행비용을 공제한 지시금액을 원지시인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였다고 하여서 수익자가 원지시인에게 전체 채무금액보다 적게 지급을 하였으므로 원지시인은 채무변제를 완전히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IV. 지급지시의 효력소멸

1.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원지시인은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에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³²⁾ 그러나 수신은행이 승낙한 지급지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아직 승낙되지 않은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원지시인이 취소를 하였다면 후속의 수신은행은 승낙할 수가 없다.³³⁾ 그러나 지급지시취소를 규정하

29)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은행은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첫째, 만약 승낙된 지급지시가 취소된 경우 둘째, 지급이 자금이체시스템하에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채무가 다각적으로 결제되는 자금이체시스템하에 전송되고 은행이 사실상 채무분담약정을 체결한 경우 셋째, 그리고 결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이다; UCC § § 4A-211(e), 405(d), 405(e).

30) 예외 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이 이 의무와 관련하여 수익자와 계약에 의하여 금지된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둘째, 수익자가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수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원지시인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통지한 경우 셋째, 지급지시에 관한 자금이 수익자에 의해서 인출되지 않은 경우 넷째, 지급이 계약에 일치한 수단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었다면 수익자가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입은 경우이다; UCC § 4A-406(a); Richard F. Dole, *op. cit.*, p. 896.

31) UCC § 4A-406(b)(c).

32) 제4A편과 표준법에서는 이미 발행된 지급지시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시킬 전송자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4A편은 취소(cancellation), 표준법에서는 철회(revocation)라는 용어로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다. 양 법의 해당조항은 지급지시의 정정(amendments)에도 적용된다. 지급지시의 정정이란 최초의 지시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지시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UCC § § 4A-210, 211; UNCITRAL Model Law § § 7, 9, 12.

33) 전송자의 법률적 무능력과 사망과 관련하여 수신은행이 제때 통보 받지 못하였다면 그의 승낙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 표준법에서는 전송자의 무능력과 사망을 파산과 같은 지급불능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4A편은 이러한 문제들을 파산법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CC § 4A-211(e)(g); UNCITRAL Model Law § 12; Richard F. Dole, *op. cit.*, p. 902.

고 있는 제4A편과 표준법은 관련당사자간의 약정과 자금이체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어 이러한 권리의 소멸에 다소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⁴⁾

(1) 지급지시승낙 전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에는 원지시인은 일방적으로 지급지시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가 있다.³⁵⁾ 원지시인은 지급지시 취소가 유효하기 위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취소 또는 정정하는 통지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전에 그리고 그 통지에 따르는 것이 가능한 시간 내에 수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지를 이행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 및 방법으로 수신은행에게 통지가 수신된다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의 취소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건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다.

New York Agency of Bank of Commerce & Credit International (BCCI). v. CITIC Industrial Bank (CITIC)사건³⁶⁾은 원지시인인 CITIC가 BCCI의 감독관이 이체한 자금을 몰수하기 전에 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지시를 취소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법정은 보통법의 원상회복원칙과 제4A편에 의하여 일단 CITIC이 수신은행인 미국국제은행에게 미화 3천 1백만 달러를 전자자금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CITIC는 적용 불가능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anca Commerciale Italiana, NewYork Branch(BCI-NY), v. Northern Trust International Banking Corporation사건³⁷⁾에서 법정은 원지시인이 비록 그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취소하여 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법정은 제4A편을 근거로 제기된 원고인 BCY-뉴욕의 지급반환주장에 관하여 비록 지급은행의 승낙 전에 지급지시취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급지시취소는 일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기한 만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³⁸⁾ 전자자금이체는 CHIPS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에

34) 자금이체시스템규칙이 제4A편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이미 승낙한 지급지시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는 제4A편과 자금이체시스템규칙이 충돌하는 경우는 제4A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표준법에서는 전송자와 수신은행이 승낙하지 않은 지급지시를 취소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명시적인 약정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UCC § §4A-211, 501 & comment; UNCITRAL Model Law §12(3).

35) 전자자금이체에서 원지시인이 지급지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지급지시의 취소는 반드시 지급지시의 전송자가 하여야 한다; UCC §4A-211(e); Mellon Bank, N.A. v. Securities Settlement Corp., 710 F. Supp. 992-996(D.N.J. 1989). 둘째, 지급지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신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UCC §4A-211(c). 셋째, 지급지시취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UCC §4A-211(b). 넷째, 전송자의 사망은 지급지시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UCC §4A-211(g); Bank of Marin v. England,; 385 U.S. 99 (1966). 다섯째, 지급지시취소의 책임은 지급지시 취소자가 부담한다; UCC §4A-211(f).

36) 90 N.Y.2d 410, 683 N.E.2d 756, 660 N.Y.S.2d 850 (1997).

37) 1997 WL 217591 (S.D.N.Y. Apr. 30, 1997); 160 F.3d 90 (2d Cir. 1998).

38) Lendino v. Trans Union Credit Info. Co., 970 F.2d 1110, 1112-13 (2d Cir. 1992); Taggart v. Time Inc., 924 F.2d 43, 46 (2d Cir. 1991); Donahue v. Windsor Locks Bd. of Fire Comm'rs. 834 F.2d 54, 57 (2d Cir. 1987); Celotex Corp. v. Catrett, 477 U.S. 317, 322-23 (1986); New York v. Stewart's Ice Cream Co., 64 N.Y.2d 83, 88 (1984); New York v. Cortelle Corp., 38 N.Y.2d 83, 86 (1975); Aetna

지급지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지시인의 그러한 주장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만이 효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지급지시승낙 후 지급지시취소

제4A편에서는 원지시인은 수신은행의 승낙이 있는 후에는 그의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지시의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이체가 중개기관으로 전자자금 이체시스템을 이용하였을 경우, 전자자금이체시스템규칙은 만약 지급지시가 일단 승낙된 후에는 수신은행이 지급지시취소 또는 정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지시의 취소 또는 정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따라서 수신은행 특히 지급은행이 이미 승낙한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Aleo International, Ltd. v. Citibank, N.A. 사건⁴⁰⁾에서 원고인 알레오사의 부사장인 이제로빅은 1992년 10월 13일 송신은행인 그 지역 시티은행지점을 통하여 미화 약 3십만 달러를 독일 베를린의 지급은행인 드레스덴 은행에 수익자를 '하마추'로 하여 전자자금이체를 지시하였다.⁴¹⁾ 이러한 지시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어 1992년 10월 14일 오전 9시에 이체지급이 되었다. 그후 원지시인인 이제로빅은 시티은행에 이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시티은행은 지시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정은 원고인 알레오는 소송의 원인을 명시도 하지 않았고 지급과 승낙은 당일 오전 9시 이제로빅이 이체지시를 중지하기에 앞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제로빅의 지급지시의 취소의 시도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며 시티은행은 책임이 없다라고 판사하였다.

또한 Delbrueck & Co.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 사건⁴²⁾에서 델부르크사는 미국 뉴욕 남부지역법정에서의 그의 제소가 가각되어 항소하였다.⁴³⁾ 이 항소는 CHIPS을 통하여 원지시인인 델부르크사가 수익자인 헤르스트의 Bankhaus I.D. K.G.a.A계정으로 미화 1천 2백 5십만 달러를 송신은행인 하노버사를 통하여 지급은행인 체이스 맨하튼은행으로 두 번의 이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⁴⁴⁾

Life & Casualty Co. v. Nelson, 67 N.Y.2d 169, 501 N.Y.S.2d 313, 315 (1986); Banque Worms v. BankAmerica Int'l, 77 N.Y.2d 362 (1991); General Elec. Capital Corp. v. Central Bank, 49 F.3d 280 (7th Cir. 1995); Middle East Banking Co. v. State St. Bank Int'l, 821 F.2d 897, 906 (2d Cir. 1987); Centre-point Merchant Bank Ltd. v. American Express Bank Ltd., 913 F. Supp. 202, 206 (S.D.N.Y. 1996); Gould v. Board of Educ., 81 N.Y.2d 446 (1993); United States v. Desimone, 140 F.3d 457 (2d Cir. 1998); Organization JD Ltd. v. Department of Justice, 124 F.3d 354, 356 n.3 (2d Cir. 1997).

39) UCC § 4A-211(c) & comment 8.

40) 612 N.Y.S.2d 540 (Sup. Ct. N.Y. Country 1994).

41) 이제로빅이 이체를 취소하려고 하는 사유는 계정번호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자금의 일부가 임의로 베를린은행에 있는 계정소유자에게 전송되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녀는 계정소유자로부터 자금을 반환 받았어야 했다.

42) 464 F. Supp. 989 (SDNY 1979), aff'd, 609 f2d 1047 (2d Cir. 1979).

43) Stella Flour & Feed Corp. v. National City Bank, 285 A.D. 182, 136 N.Y.S.2d 139 (1st Dept. 1954), aff'd, 308 N.Y. 1023, 127 N.E.2d 864 (1955).

44) Schreiber v. Keller Engraving Co., 57 Misc. 644, 108 N.Y.S. 658 (Sup. Ct. 1908); Farr v. Newman, 14 N.Y.2d 183, 187, 250 N.Y.S.2d 272, 199 N.E.2d 369 (1965); Nolan v. Williamson Music, Inc., 300 F.Supp. 1311, 1316 (S.D.N.Y. 1960); Ford v. Grand Union Co., 268 N.T. 243, 252, 197 N.E. 266 (1935); Lewis Sagal Co. v. Smith., 35 F.2d 182, 183 (3d Cir. 1929); Sokoloff v. National City Bank,

이 항소의 주요쟁점은 CHIPS를 통한 자금이체가 최종적이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항소법정의 무어(Moor)판사는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의 이체는 취소 불가능하여 이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다.⁴⁵⁾ 즉, CHIPS를 통한 자금이체는 지급지시가 전송되어 지급은행에 수신되는 즉시 수익자에게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체가 시작되면 이 이체는 사무원의 과실에 의한 조정을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⁶⁾

또한 *Cumis Insutance Society, Inc. v. Citibank, N.A.*, 사건⁴⁷⁾에서 마리오엘더는 벤치마크 연방신용조합에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벤치마크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리오엘더의 계정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자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팩스로 된 이체지시로 미화 약 8만 달러가 뉴욕에 있는 시티은행계정에 이체되었다.⁴⁸⁾ 벤치마크는 이 지시가 사기성 있는 이체지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시티은행에게 통지하여 지급지시를 취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법정은 시티은행이 수익자계정에 지급하라는 이체지시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을 반환하기를 거절한 시티은행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다.⁴⁹⁾ 이러한 판례로 보아 지급지시의 취소는 지급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한 후 또는 지급은행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의 거절

지급지시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소멸되는 이유는 지급지시취소 뿐만 아니라 수신은행에 의한 지급지시의 거절이 그 원인이 되고있다. 지급지시의 취소가 원지시인의 권리라면 지급지시에 대한 거절은 수신은행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⁵⁰⁾ 수신은행은 전송자로부터 수신받은 지급지시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고 거절할 수 가 있다. 지급지시를 거절할 경우 거절통지를 할 것을 약정을 하였다면 반드시 거절 통지를 통하여 거절하여야 한다.

(1) 지급지시의 거절 통지

제4A편과 표준법에서는 지급지시거절에 대한 통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첫째, 거절 기간에 대하여 제4A편에서는 지급지시 거절통지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의

250 N.Y. 69, 164 N.E. 745 (1928); *Indianapolis Morris Plan Corp. v. Karlen*, 28 N.Y.2d 30, 36, 319 N.Y.S.2d 831 268 N.e.2d 632 (1971); *Hanlon v. Union Bank of Medina*, 247 N.Y. 389, 391, 160 N.E. 650 (1928).

45) *Miller*, 406 F. Supp. 452 at 457.

46) *Miller v. Wells Fargo Bank International Corp.*, 406 F.Supp. 452 (S.D.N.Y. 1975), affirmed, 540 F.2d 548 (2d Cir.1976); *Paragon International, N.V. v. Standard Plastics, Inc.*, 353 F. Supp. 88, 93 (S.D.N.Y.1973).

47) 921 F. Supp. 1100, 29 UCC Rep. Serv. 2d (CBC) 915 (S.D.N.Y. 1996).

48) *Cumis*, 921 F. Supp. at 1106, 29 UCC Rep. Serv. 2d (CBC) at 923.

49) 제4A편에 의하면 지급지시가 일단 승낙된 후에는 수신은행이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자금이체시스템의 규칙이 은행의 동의 없는 취소 또는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한, 그 지시의 취소 또는 정정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CC §4A-211.

50) Neil O. Littlefield, "Payment: Articles 3, 4, and 4A", *The Business Lawyer*, Vol. 54, November 1998, p. 1543.

약정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¹⁾ 그리고 표준법에서는 지급지시를 승낙하지 않은 수신은행은 늦어도 이행기간 종료 일의 다음 은행 영업 일까지 전송자에게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둘째, 지급지시 거절통지의 방법에 관해서 제4A편에서는 수신은행이 전송자 앞으로 구두, 문서 또는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거절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³⁾ 이 경우 거절통지는 특정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수신은행이 지시를 거절하거나 또는 지시를 이행하거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면 충분하다. 또한 지급지시의 거절은 주위상황에 비추어서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시될 때 인정된다.⁵⁴⁾ 만일 거절통지가 상업적으로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행되지 않았다면 통지가 수신된 때에 거절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전송자의 계정에서 충분한 자금이 출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시거절을 하지 않거나 수익자의 계정에 지급이체 한다는 것을 수익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면 이 지급지시는 승낙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지급지시거절로 인한 이자지급의무

제4A편에서는 수신은행이 거절한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지시금액이 이미 수신은행에 이체되었다면 원지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원지시인이 이행일에 지급지시거절통지를 수신하지 않고 그의 계정에도 이자가 부가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다. 이때 수신은행은 지시금액과 관련하여 이행 일로부터 지급지시가 취소된 날 또는 원지시인이 지급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수령한 날 또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안 날 까지 중 어느 것이든 가장 빠른 날까지의 경과 일수 분의 이자를 원지시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⁵⁶⁾

만일 그 기간 중 원지시인의 출금가능 잔고금액이 지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감액된다. 왜냐하면, 원지시인은 송신은행이 그의 지급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지급지시가 승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출금하지 않기 때문이다.

Pan American World Airlines v. Midatlantic Natl. Bank, 사건⁵⁷⁾에서 법정은 송신은행이 고객인 원지시인의 비이자 관련계정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지급은행에게 자금을 이체 할 것을 지시 받은 후에 여러 달 동안 이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지시인은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지시인이 송신은행에 비 이익관련계정에 출금가능 잔고를 가지고 있고 송신은행이 그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지시를 거절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송신은행은 원지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송신은행은 이러한 책임과 관련하여 원지시인과 약정을 체결

51) UCC § 4A-210(a).

52) UNCITRAL Model Law § 7(3)(4).

53) UCC § 4A-210; UNCITRAL Model Law § 9.

54) 수신은행이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거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둘째,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경우, 셋째, 지급지시의 적절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넷째, 원지시인의 계정잔고가 지급지시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등이 있다; Richard F. Dole, op. cit., p. 905.

55) UCC § 4A-210(b).

56) UCC § 4A-209 comment 3.

57) 1991 U.S. Dist. LEXIS 389 (D/N.J. 1991).

결하였다면 약정에 기초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무권한 지급지시

무권한 지급지시(*unauthorized payment order*)란, 수신은행이 전송자가 누구인지 입증되지 않은 자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를 말한다.⁵⁸⁾ 제4A편에서의 무권한 지급지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 권한 지급지시에 의한 손실부담여부는 보안 절차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보안절차가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은행이 일반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고 보안절차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원지 시인이 손실을 부담한다.⁵⁹⁾ 만일 수신은행이 보안절차의 이용 없이 무권한 지급지시를 이행하였다 면, 수신은행은 지급지시의 수익자로부터 구상하는 방법 외에 다른 구제책은 없다고 할 수 있 다.⁶⁰⁾

Bradford Trust Company of Boston v. Texas American Bank- Houston 사건⁶¹⁾에서 항과 데이비 드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기꾼은 미화 8십만 달러에 휴스턴에 있는 수익자인 콜로니얼사 로부터 진귀한 동전과 금전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송신은행인 브레드포 트는 최근 개정된 내부지시를 따르지 않고⁶²⁾ 지급은행에게 지급지시를 함으로서 수익자에게 그의 계정으로 자금이 예탁되었다라는 것을 통지하였다. 통지를 받은 수익자는 금전을 사기꾼들에게 양도 하였다. 그후 이 지급지시가 사기꾼을 알고 이 지급지시를 취소하였지만 이미 거래는 끝이 난 뒤였 다.⁶³⁾

항소법정은 지급지시를 이행하는데 태만한 텍사스 어메리칸은행과 브레드 포드사 모두에게 이 손 실과 관련하여 책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보안절차에 따라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손실은 지급지시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신 은행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무권한 지급지시에 대한 이자보상문제에서 만약 수신은행이 무권한 지급지시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시간 내에⁶⁴⁾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면 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8) UCC §4A-202.

59) J. Kevin French, "Unauthorized and Errous Payment Order", *The Business Lawyer*, Vol. 45, June 1990, p. 1429.

60) Peter A. Alces, *cases, problems and materials on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3, pp. 562-563.

61) 790 F.2d 407(App Cir 1986).

62) 1980년 4월에 브레드포드사는 유사한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이 사기사건으로 새로운 보안절차를 제정하였다. 이 새로운 보안 절차에는 주식보유자가 브레드포드사를 통하여 미화 10 만 달러 이상을 거래할 경우는 브레드포드사는 반드시 관련 서류의 검토, 주식보유자의 확인, 상급 관리 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63) *Duncan v. Cessna Aircraft Co.*, 665 S.W.2d 414 (Tex.1984); *Services v. Amercian National Bank and Trust Co.*, 542 F. Supp. 323 (N.D.Ill.1982); *Greenville Avenue State Bank v. Lang*, 421 S.W.2d 748 (Tex.Cir.App.1967); *Western Union Telegraph Co. v. American State Bank*, 277 S.W. 226 (Tex.Civ.App.1925); *Western Union Telegraph Co. v. Cosby*, 99 S.W.2d 662 (Tex.Civ.App.1936); *Price v. Neal*, 3 Burr. 1355 (1762); *Perini Corporation v. First National Bank of Habersham County*, 553 F.2d 398 (5th Cir.1977).

64) 상당한 시간이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UCC §4A-304.

V. 결 론

미국에서의 거액전자자금이체는 재무부의 국고지급을 비롯 매년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이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거액전자자금이체를 통하여 자금결제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제시간이 단축되어 효율적이며 비용이 저렴하고 또한 거액이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를 시작으로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이행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지급지시의 효력발생은 전자자금이체의 종료와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의 효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지시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된다. 지급지시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구속력 있는 지급지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송자가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주 계약과 일치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신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수신은행은 지급지시를 승낙할 강제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이 지시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채무가 변제된다. 그러나 지시금액에는 수신은행이 자금이체과정에서 미리 공제한 이체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급지시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될 수 있다. 원지시인의 지급지시 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전송자의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이다. 지급지시의 효력이 소멸되면 전자자금이체는 그 순간 종료되며 수익자에 대한 원지시인의 채무는 변제되지 않는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 지급지시의 효력발생과 소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지시인은 그의 지급지시취소가 유효하기 위하여 지급은행이 지급지시를 승낙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둘째,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방식은 제한이 없으나 당사자간에 거절시기에 관한 혼란으로 이자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지규정을 두어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셋째, 지급지시과정에서 사기와 같은 무권한 지급지시는 입증되지 않은 전송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지급지시의 입증과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보안절차를 확립할 것을 약정하여야 된다. 만약 보안절차를 확립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와 같은 무권한 지급지시에 따른 책임을 수신은행에게서 원지시인으로 이전시킴으로서 수신은행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姜元辰,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姜元辰,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모델 정립과 과제”, 「e-비즈니스연구」제1권, 국제 e-비즈니스학회, 2000.

孫眞華, “電子資金移替去來의 法的 規制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0.

Alces, Peter A. Payment Systems, West Publishing Co., 1993.

- Ballen Robert G. and Diana Natalie H., "The Need for Article 4A", *The Business Lawyer*, Vol. 45, June, 1990.
- Ballen, Robert G., "Electronic banking products and services: The new legal issues",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5, April 1998.
- Benjamin Geva, "UCC Article 4A in the courts: Recent developments",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5, November/December 1998.
- Clay Hamlet, "Community banks go online", *ABA Banking Journal*, Vol. 92, March 2000.
- C. Robert Beattie,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 32, Winter 2000.
- Gillette, Clayton P. and Schwartz, Alan, and Scott, Robert E. *Payment Systems and Credit Instruments*, The Foundation Press, Inc., 1996.
- Gerald McLaughlin, "Commercial law: Electronic transactions", *National Law Journal*, Vol. 22, October 1999.
- Krinick, Evan H, "UCC Article 4A holds the answers to disputes that may arise when there is an error in an electronic funds transfer",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6, June 1999.
- Littlefield Neil O., "Payments: Articles 3, 4, and 4A", *The Business Lawyer*, Vol. 54, November 1998.
- Mahony, Donal O and Peirce, Michael, and Tewari, Hitesh, *Electronic Payment System*, Artech House Boston, London, 1997.
- Mann, Ronald J., *Payment Systems and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a Division of Aspen publishers, Inc., 1999.
- Meadows Robyn L and Bjerre Carl S,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urvey: Introduction", *The Business Lawyer*, Vol. 54, August 1999.
- Uniform Commerce Code, Article 4A Prefatory Note, Comment(1999-2000).
- Computer magazine, <http://www.computerworld.com/home/news.nsf/all/9806302>
- Federal Reserve Bank, <http://www.federalreserve.gov>
- Kyungwon University, <http://www.kyungwon.ac.kr/~profsjH/eft/ml-ict.html>
- Cornell University, <http://www.law.cornell.edu/UCC/4A/overview.html>
- University of Pennsylvania, <http://www.law.upenn.edu/library/ulc/UCC2b>
-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proquest.umi.com/pqdlink>
-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solarsnet.snu.ac.kr>